

# 난민을 위한 매뉴얼 AtoZ

주최



난민인권센터

후원

**bkl** 재단법인 동천

---

# I. 난민인정절차 관련 제반 사항

## 1. 난민의 정의 및 신청

### (1) 난민이란 누구인가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 (2) 난민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난민신청은 공항 및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2.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

### (1) 입국하는 동시에 난민신청을 하고 싶어요, 출입국항에서는 어떻게 난민신청을 하면 되나요?

입국심사 시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영어로 된 신청서만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통역인이나 번역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불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향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2) 난민신청을 했는데 입국이 허가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왜 그런 거죠?**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먼저 심사하게 됩니다.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무원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7 일 이내에 회부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서를 냈는데도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 신청한 지 7 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단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7 일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회부로 간주하여 입국이 허가됩니다. 7 일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관련 단체 및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3) 회부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인권침해상황(화장실을 못가게 하거나, 전화를 이용할 수 없음)이 발생했어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회부심사 대기 중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단체에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어떤 경우에 불회부 처분을 받게 되나요?**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위해사, 비협조로 인한 신원 확인 불가자,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난민인정 신청자의 경우 불회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위명여권의 경우는 강제퇴거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또한 박해의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불인정자 및 취소된 자가 새로운 사유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유엔난민기구 외에 다른 UN 기구(팔레스타인 난민기구 등)로부터 보호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백히 이유없는 난민신청의 경우 불회부될 수 있습니다.

**(5) 불회부처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회부시 불회부 사유를 담당공무원을 통해 명확히 파악한 후 NGO 등 조력단체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6) 회부처분을 받았어요. 이젠 뭘 해야 돼요?**

회부처분이 내려지면 난민신청접수증이 교부되는 동시에 난민심사를 위한 출석요구 등 일부 조건 하에 90 일 범위에서 입국이 허가됩니다. 앞으로 체류할 곳의 관할 사무소에 가서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면 기타(G-1)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때부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체류기간 도과 시 벌금이 부과되니 가능한 빨리 체류자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7) 앞으로 난민심사는 어디에서 진행되게 되나요?**

이후로는 자신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거점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됩니다.

**3. 입국 후 난민 인정 신청**

**가. 신청일반**

**(1) 언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난민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난민신청 이외의 목적( 취업, 학업 등)으로 입국한 후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 난민신청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경우 난민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난민신청을 하면 한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건가요?

난민신청자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난민협약 제 33 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 3 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 (3) 어디에서 난민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관련단체에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4) 난민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난민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난민인정신청서,
- ② 여권(다만,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여권 등을 소지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로 대신함.)
- ③ 스스로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ex. 박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문기사, 국제사면위원회 발행 인권보고서 등)
- ④컬러사진 1 매(3.5cm×4.5cm)등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자료를 기준으로 난민심사가 진행되므로 난민인정을 위해 진술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1) 난민인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난민인정신청서는 Part A, B, C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 에는 기본정보, B 에는 박해에 관한 짧은 진술, C 에는 상세진술을 적습니다.

특히 Part C 는 난민심사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요건을 바탕으로, 박해에 초점을 맞춰, 6 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기반해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 시 빈 종이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조작하거나 실제와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게 되므로 사실만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이후 진행하는 면담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빙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작은 부분(날짜, 이름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 작성해야 합니다.

### (2) 신청서를 외국어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신청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언어로의 작성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는 관련단체에 번역 조력을 요청하거나 관할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번역된 신청서를 가지고 난민신청을 할 때에는 번역인을 함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함께 가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사무소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글을 쓸 줄 모르는 데 친구가 대신 써주면 안되나요?

---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장애, 문맹 등)에는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타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가지고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신청서 작성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아는 것만 채우면 안 되나요?**

진술서 작성 시 빈 칸을 남겨두어선 안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없음’으로 적어야 합니다. 몇 가지 헛갈릴 만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5)사증 종류에는 단수/복수가 아니라 입국 시 받았던 사증의 종류(C-3 등)를 표기해야 합니다. 13-5)~13-8)은 출국허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6.가족사항, 7.학력사항, 8.경력사항 등은 길더라도 빼먹지 않고 적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5) 신청서 제출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신청서 제출 시 사본을 한 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을 보관해두면 면담 일정이 잡혔을 때 신청서와의 진술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단체의 조력을 받게 될 때에도 용이합니다. 사본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수료를 내고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한 번 제출하고 나면 인터뷰 전까지는 신청서를 복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7) 증거자료로는 어떤 걸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박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ex.당원증, 경찰기록, 활동사진, 관련인물의 편지 등)

---

증거자료 제출 시에는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가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가져와야 합니다. 원본을 제출했다가 공무원의 과실로 분실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소송단계에서 증거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많다면 증거목록을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 **(8) 혼자서 난민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체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이후 심사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단체의 조력을 통해 난민신청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신청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가능한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에 비해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큼니다. 먼저 단체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9) 난민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친구가 대신 접수해줘도 괜찮을까요?**

난민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 및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 난민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신청이 완료된 건가요?**

접수증을 받아야 난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접수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나. 기타

### (1) 갑자기 난민인정심사가 종료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에 3번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종료됩니다. 인터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출석하지 못했던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전 신청서와 내용이 동일해도 괜찮습니다.

### (2) 난민신청을 하고 주소가 바뀌었어요. 심사는 계속 같은 곳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면접조사 실시 이전인 경우에는 현재 체류지를 관할하는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난민신청이 이첩됩니다. 면접조사 및 심사도 이첩된 사무소에서 진행되니 면접조사 연락이 올 때 연락이 온 사무소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난민면접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무소 변경 없이 난민신청 접수사무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면접을 하라는 연락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죠?

난민심사 진행 중에 연락처나 체류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난민과에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과에 추가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민심사 관련 사실조사 및 면접 등을 위해서는 최신의 주소지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주소 등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저는 이미 난민신청을 한 상태인데, 저의 아내와 아이가 난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인 제가 먼저 신청했으면 둘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난민신청자의 배우자가 난민신청을 원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도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신청에 결과가 귀속되나 신청서는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사유는 부모의 사유와 동일하게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5) 미등록 외국인도 난민신청이 가능한가요?**

미등록 외국인도 난민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 신청 자체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을 하고 ID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확한 벌금액은 체류도과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경과하면 구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길다면 조력단체를 방문해 상담 후 난민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인 상태로 난민지위를 신청하면 심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체류연장을 위해 난민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6)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했는데요,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위조여권의 경우 미리 자진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구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난민심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난민신청 시 본인이 제출한 서류(신청서 및 입증자료)와 난민면접조서의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출입국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난민심사 담당사무소에서는 원본의 열람/복사가 가능하며 그 외 사무소에서는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열람의 경우 500 원, 복사는 장당 50 원입니다.

난민신청 직후에 난민신청서를 복사하거나, 면담을 하고난 직후 면접조서를 복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뷰를 앞두고는 신청서를 열람/복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청서 사본을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 나. 건강검진

### (1) 난민신청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라는 종이를 받았는데요, 꼭 가야 하나요?

난민신청자는 전염성 질병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해진 날짜,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게 되고, 당일에 가더라도 방문시간이 늦으면 받지 못합니다. 한 번 정도는 다시 검진일정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다시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본인비용부담)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2) 난민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는데요, 어디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받지 못했을 경우 거주지 근처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 소변검사, 매독, 에이즈 검사가 포함 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입국사무소 및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조력단체에 연락하여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법무부 난민인정심사

##### 가. 난민인정심사과정

###### (1) 난민인정심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권역별 8 개의 거점 사무소에서 난민인정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관할 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접수된 난민신청서류는 거점사무소로 보내지고, 이후 거점사무에서 면접 및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표 1] 각 권역별 8 개의 거점사무소**

거점사무소	관할 사무소 및 출장소
인천공항	인천공항
서울	서울, 서울남부, 인천, 수원, 양주, 김포, 대전, 춘천, 청주
	(출장소) 세종로, 안산, 평택, 오산, 서산, 천안, 고양, 동해, 속초, 고성
부산	부산, 대구, 김해, 울산, 창원
	(출장소) 감천, 구미, 포항, 통영, 사천, 거제
광주	광주, 전주
	(출장소) 목포, 군산
제주	제주

화성보호소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청주보호소
여수	여수
	(출장소)광양

(출처: 법무부, 난민인정절차 가이드북 p.19)

### (1) 난민인정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체류지 관할 거점 사무소의 난민심사관(담당 공무원)이 신청자를 면접 조사(인터뷰)하고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난민심사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고, 관련된 본국정보를 조사합니다. 이후 난민심사관은 신청자와의 면담을 진행한 후 1 차 판단을 내립니다. 심사관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면 최종결정이 내려집니다.

### (2) 난민인정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난민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2015. 12월 기준 ) 난민법 상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심사대기자가 많아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신청 후 1년 정도 지나면 면접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면접조사 후에는 빠르면 1주일, 늦어도 3개월 이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신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더 빨리 결과가 나옵니다. 심사기간은 점차 단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6개월 이상 걸릴 시 관할 사무소에서는 6개월 이내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만료 7일 전까지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

(NOTICE ON EXTENSION OF REVIEW PERIOD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 (3) 난민심사 결정은 어떻게 통보가 되나요?

난민인정심사 결과가 나오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내방하여 결과를 수령하라는 전화가 옵니다. 결과는 관할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문자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담당 공무원에 따라 상이합니다.)

불인정결정 시에는 난민불인정통지서와 불인정사유서가 교부되고, 인정 시에는 난민인정증명서가 교부됩니다.

### (4) 난민신청을 하고 3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런거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난민심사절차의 일부가 생략되어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거짓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경우
-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신청을 한 경우
-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할 경우

## 가. 면담

### (1) 난민면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난민 신청지의 거점 사무소에서 면담이 실시됩니다. 면담은 먼저 인적 사항을 묻는 것으로 시작해 박해 사실과 입국경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경력, 가족의 인적사항, 신분증 및 입증자료, 출국 및 입국과 난민신청 경위 및 난민신청의 경력, 소속단체 및 활동내용, 체포 구금되거나 처형된 경력, 귀국 시 박해의 가능성, 건강, 애로사항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같은 성의 공무원과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 (2) 면담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관할 사무소 난민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일시에 면담이 진행됩니다. 전화로 연락이 오고 출석요구서가 통지되니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지정일에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리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 (3) 면담에서 말한 내용이 본국에 전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정말 사실대로 진술해도 괜찮나요?

면담은 안전한 곳에서 비공개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무원을 신뢰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셔도 됩니다. 거짓 진술을 할 경우 향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4) 혼자 면담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면담에 누군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공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면담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난민신청자를 위해 NGO 활동가가 동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

**(5) 면담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무소에 영상녹화장비가 구비되어있으며, 공무원에게 요청시 면담과정의 녹음/녹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녹음/녹화를 거절당한다면 ngo 에 조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면담 시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폭언, 반인권적 언행 등이 면담에서 발생할 경우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 인권위 신청, 단체신고, 법무부 이의제기, 국민신문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미리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사무소마다 면접 방식 및 면접관의 태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 통역**

**(1) 면담 시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면담 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요청 시에는 같은 성의 통역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역인이 제대로 통역하는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통역인이 본인의 진술보다 짧게 통역하거나, 부연설명을 덧붙일 경우 본인의 진술만을 정확히 통역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경우 통역인 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통역인 교체가

---

불가능한 경우에는 녹음/녹화를 요청하여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3) 친구가 통역을 해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섭외한 통역인은 동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 언어의 통역인을 구하기 어렵거나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기도 합니다.

### **(4) 면접이 끝나고 면접조서를 확인하는데 틀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면접이 끝나면 통역 또는 번역을 통해 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역 또는 번역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세한 통역 또는 번역을 요구하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사인하지 말고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면접조서기록은 이후 이의신청, 소송단계에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만일 신청서와 불일치한 내용이 발생할 경우 신빙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다. 난민인정**

### **(1) 난민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난민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사무소(체류지 관할 이외 사무소, 출장소도 가능)에서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난민인정서를 가지고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면 체류자격을 거주(F-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자는 난민인정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체류연장시

기본적으로 3년이 연장됩니다. 체류 자격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난민인정증명서,
- ② 신청서(별지 제 34 호 서식)
- ③ 사진 1 매
- ④ 여권(여권 미제출 시 사유서 1 부)
- ⑤ 체류지 입증서류
- ⑥ 별도 수수료 (2015년 기준 130,000 원)

## **(2)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인도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해주는 제도는 없나요?**

인도적체류자(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란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되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에 허가 사실이 적혀 통지됩니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을 변경(G-1-6)해야 받아야 합니다. 매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불인정**

#### **(1) 불인정 결정은 어떻게 통보가 되나요?**

---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되면 출입국사무소(체류지 이외의 사무소, 출장소도 가능)에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불인정 사유서 총 2 장을 받게 됩니다. 불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통지서 하단에 적힌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불인정사유서에는 불인정된 사유가 한국어로 적혀있으므로 지인 및 조력 단체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체류연장을 하러 출입국사무소에 갔는데 불인정 결정이 나왔다고 체류연장을 허가해주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불인정 결정으로 인해 체류연장이 거절된 경우 이의신청을 한 후에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3)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난민의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인정될 수 있나요?**

난민협약에 근거하여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엔난민기구 외에 UN 다른 기구(UNRWA 등)로부터 보호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5. 이의신청

### 가. 이의 신청 과정

#### (1)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체류지 이외 가능)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0 일을 계산할 때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합니다. (단, 기간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일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 (3)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서(출입국사무소에 비치 또는 hikorea.go.kr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1 부를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불인정통지 시 이의신청서에 서명하라는 안내를 받더라도, 바로 서명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명만 하고 제출할 경우 100%기각이 되므로 ‘불인정결정통지서’에 적힌 불인정사유를 확인하고, 반박하는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ngo 의 지원을 받은 후 이의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_

---

**(4) 이의신청 과정에서 지원 단체의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 준비해가야 할 것이 있나요?**

난민불인정 통지서 및 불인정 사유서, 난민인정 신청서 및 제반 서류, 면접조서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된 관할사무소에서 복사 가능)를 지참해 지원단체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하려는 증거자료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진술서 작성 및 증거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릴 경우, 사유를 간략히 적어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추가로 진술서와 증거자료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 이의신청 심사 절차**

**(1) 이의신청은 누가 심사하나요?**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1차심사와 달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난민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난민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 이의신청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유의미한 증거자료를 추려 법무부 난민과의 소위원회에 넘깁니다. 소위원회에서 1차 결정을 내려 난민위원회로 케이스를 보내면, 난민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난민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며, 한 번 열릴 때마다 수백 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소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선별된 케이스 위주로 심사가 진행되며, 나머지 케이스는 대부분 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심사가

---

이루어지나 필요 시 추가입증서류를 요구하거나 면담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증거자료를 관할사무소에 제출하면, 증거자료가 생략되어 난민과로 보내지지 않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증거자료인 경우에는 법무부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3) 이의신청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1 년 정도 걸립니다.(2015.9 월 기준) 난민법 상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심사대기자가 많아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6 개월 이내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NOTICE ON EXTENSION OF REVIEW PERIOD OF APPEAL)가 통지됩니다.

### **(4) 이의신청결과는 어떻게 통지되나요?**

이의신청결과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교부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된 경우 난민인정증명서가 교부되고, 이유 없다고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가 교부됩니다. 기각결정을 받을 경우 90 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이의신청마저 기각이 되면 난민인정을 받을 길은 사라지는 건가요?**

이의신청에 대한 불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단체를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행정소송

### 가. 1 심 진행 절차

#### (1) 행정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은 총 3 심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1 심(서울에서 심사가 진행된 경우 서울행정법원, 그 외는 지방 관할법원)에서 사건을 판결하고, 이 판결에 불복한 측이 14 일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서울에서 심사가 진행된 경우 서울고등법원, 그 외는 지방관할법원)에서 2 심(항소심)이 진행됩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이에 불복한 측이 14 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 (2) 행정소송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1 심의 경우 3~6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항소심은 6 개월~1 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법원은 대략 3 개월 정도 만에 판결이 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2 년 이상의 기간을 예상해야 하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3)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법원에 방문하면 법원직원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도 혼자 진행할 수는 있으나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지원단체에 조력을 요청하기를 권장합니다.

---

#### (4)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소송관련비용을 면제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려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통역수수료 등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통 변호사비용과 통역수수료만 인용이 됩니다.

#### (5) 소송구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소송구조결과가 나오면 송달주소로 소송구조결과가 송달됩니다. ‘인용’은 신청한 모든 사항에 대해 모두 소송구조를 받게 된 것이고, ‘일부인용’은 표시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구조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각’으로 표시가 됩니다.

#### (6) 소송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소송의 경우 보통 2-3 번의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송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한 번 정도 당사자심문이 진행되고, 이후 판결이 내려집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직접 변론 기일에 참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의논하여 필요한 일자에 참석하면 됩니다.

#### (7) 소장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작성한 소장을 가지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들러 인지대(95,000 원) 및 송달료(63,800)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소장접수 창구로 돌아오면

---

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지대(1,000 원)와 송달료(6,380 원)을 (비용수정예정)납부하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후 소송 진행과정에 필요하므로 이를 잘 적어두어야 합니다.

## 나. 항소 및 상고

### (1) 1 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심에서 패소한 경우 14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절차에 관해서는 1 심을 지원한 소송대리인, 지원단체, 또는 행정법원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경우,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체류를 좀 더 연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국귀환, 제 3 국 출국 등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2) 2 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심에서 패소한 경우 14 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절차에 관해서는 1 심을 지원한 소송대리인, 지원단체, 또는 행정법원을 통해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3) 재판 시 통역도 제공되나요?

미리 요청하면 재판 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소송구조를 받을 경우 통역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구조를 받지 못한다면 일정 통역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 7. 기타

### (1) 난민신청을 다시 할 수도 있나요?

난민신청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거나 신속절차를 통해 결과를 빨리 통보할 가능성이 큼니다.

### (2) 다른 나라로 출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이 허용된다면 난민신청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비자발급과 입국허가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가 있다면 그 곳으로 출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3) 학생비자, 결혼비자 등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G-1 비자의 체류자격 변경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며 외국에 나가서 체류자격을 새로 획득한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학생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본국에서의 혼인신고 기록이 필요하기에 본국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단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4) 미등록 체류로 인해 구금된 상황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보호소 내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양식을 요청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호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인정심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추가적인 조력을 받기 원하면 관련 단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5) 난민신청 이후 불법취업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난민신청자인데도 강제출국 되나요**

불법취업으로 단속된 경우 1 회에 한해서는 벌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는 즉시 관련단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회 이상 단속되는 경우에는 구금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 번 구금이 되면 난민인정심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 **8. 난민심사 종료 및 지위의 취소와 철회**

### **(1) 난민신청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난민인정신청을 자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박해의 원인이 사라지거나 본국 상황이 바뀌어 스스로 난민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스스로 난민인정신청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한 경우, 결혼이민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려고 하는 경우,기타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 **(2) 난민인정심사가 강제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나요?**

---

소재불명된 때, 출국한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때, 한국국적을 취득한 때, 사망 등 난민인정 심사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난민인정심사가 강제로 종료됩니다.

소재불명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신청이 사라지고 6개월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니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3) 한 번 결정된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거짓서류 제출, 거짓 진술, 사실 은폐를 통해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난민인정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난민인정취소 통지서가 교부되고 난민인정증명서가 회수됩니다. 철회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4) 한 번 결정된 난민인정이 철회될 수도 있나요?

난민인정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되는 경우 난민인정취소·철회 통지서가 교부되고 난민인정증명서가 회수됩니다. 철회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II. 체류 및 법률 관련

### 1. 체류 및 외국인 등록 관련

#### (1) 아직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류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여권에 찍힌 입국심사인의 날짜에 체류기간을 더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사증 없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에 기재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만료일이 됩니다

체류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합니다. (단, 기간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일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체류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입니다.

#### (2) 난민신청자는 어떤 체류자격을 갖게 되나요?

난민신청자의 경우 기타 G-1 (G-1-5,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체류자격에 해당됩니다.

#### (2) 난민신청을 한 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민신청을 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찾아가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을 마쳐야 합니다. 한국에 90 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90 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난민신청 이후

받은 난민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G-1 으로 체류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 (3)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처에 사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1345(외국인종합정보센터)에 전화하여 주소를 말하면 관할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관련된 민원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센터 입니다. 한국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재한외국인 행정·생활 종합안내  
다국어 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 센터소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의거,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정보안내를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언어장벽없이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입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 온라인 정보안내,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지원 포털 Hi Korea와 한국어와 19개 외국어로 상담을 제공하는 1345 전화상담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업무범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행정 및 생활 관련 다국어 종합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초청, 취업, 유학 등 사증(비자) 관련 업무

재입국허가 등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련 업무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등 신분증관련 업무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허가 관련 업무  
 귀화시험, 국적 취득, 국적 이탈 등 국적관련 업무  
 난민지위 판정 및 난민지원 관련 업무  
 밀입국,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신고 등 외국인관련 범죄신고  
 사회통합교육,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등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관련 업무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지원제도, 관련기관 및 단체 문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화통역지원

#### 이용안내

상담시간 : 평일 09:00 ~ 22:00 (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1345로 연결

※ 해외에서 이용 시, 82-1345(지역번호 필요없음)

다국어 상담 : ☎ 1345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뒤 \*표 버튼을 누르면 됨.

출처: 하이코리아 웹사이트([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 (4) 난민신청자로서 외국인등록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신청서(별지 제 34 호 서식, 관할출입국에 가면 비치되어있음)
- ② 여권(여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사관에 신고한 여권본실신고 서류가 있어야 함. 대사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사본을 지참 후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 면담 요)
- ③ 표준규격사진 1 매
- ④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 ⑤ 체류지 입증서류
- ⑥ 수수료 13 만원(체류자격 변경 10 만원, ID 카드 발급 3 만원. (2015 년

기준)

※ 체류지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없어서 지인의 주소를 적어야 할 경우에는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지인의 거주숙소 제공사실확인서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 하이코리아>민원서식>체류관련>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체류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된 날짜 중 오른쪽 날짜가 체류기간만료일입니다.

**(6)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②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③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④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에 대한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외국인등록신청서(재발급 받으려는 사유 소명)
- ② 천연색 사진(3X4CM) 1 매
- ② 수수료

---

### **(7) 외국인 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단, 17 세 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 **(8) 체류기간은 어떻게 연장하나요?**

난민인정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의 확정시(소송 포함)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6 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만료일이 다가오면, 체류기간만료 예고통지 우편물이 송달됩니다.

같은 출입국사무소더라도 어떤 공무원이냐에 따라 연장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는 ‘6 개월 범위 내’에 공무원의 재량으로 허가하도록 맡겨진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구금될 수도 있으니 체류기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9) 언제쯤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되나요?**

체류기간 만료일 2 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너무 일찍 가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2 주 전 정도 가는 것이 적당합니다.

### **(10)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으면 체류연장이 안되나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되는 전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직후 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직후

---

체류연장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1)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데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죠?**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체류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소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장 소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력단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체류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진행 중 체류를 연장하려면 소계속증명원 등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 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계속증명원은 법원에 있는 증명원 양식을 채우고 인지대 500 원을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 34 호 서식” 관할출입국 비치)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사관에 신고한 여권분실신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사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여권 사본을 가지고 가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과 면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력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14) 체류 연장신청이 불허 되었습니다. 왜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종 체류허가 등이 취소·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 연장 신청을 불허할 경우, 이유를 고지해야 하나 고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체류 연장 신청이 불허될 경우 그 사유를 꼭 파악하여 지원 단체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5) 주소가 변경됐어요. 어디에 알려야 하죠?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체류지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 체류지의 시·군·구나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양식은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체류관련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에서 다운로드 가능)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면 담당공무원이 외국인등록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교부합니다. 체류지

---

변경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기타

### (1) 난민신청자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난민신청자도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허가기간 내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비자 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해외에 있다가 난민심사를 위한 면담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난민신청이 철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여권을 재발급받고 싶습니다.

여권이 만료되거나 분실될 경우 대사관에서 연장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난민사유 상 박해주체가 본국일 경우 대사관과 접촉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외국인 보호소

### (1)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강제출국 되는 건가요?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보호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은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면 신청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민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 보호소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보호소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아플 경우, 보호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등에는 2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일시보호해제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신청서를 받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이

---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에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하기 앞서 변호인이나 조력단체와 먼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보호소에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보호소 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소에 비치되어있는 인권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시거나, 관련단체에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Ⅲ. 인도적체류자 권리와 처우**

## **1.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와 처우**

### **(1) 인도적체류지위란 무엇인가요?**

인도적체류자(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란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 **(2) 인도적체류지위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되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에 허가 사실이 적혀 통지됩니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난민신청자 비자 G-1-5에서 인도적체류허가자G-1-6로 변경)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G-1까지만 체류 자격이 나와있어 인도적체류지위로 변경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자는 매회 6개월-1년의 범위 내에서(주로 1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3)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았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요.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았으나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원할 경우 이의신청 및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한 번 결정된 인도적체류지위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 (4) 인도적체류지위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거짓 서류 제출, 거짓 진술,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인도적체류지위에 대한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국의 상황이 달라져 돌아갈 수 있게 된 경우나 그 외에 난민인정의 제한, 취소 및 철회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된 이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인도적체류지위에 대한 결정이 철회 됩니다.

### (5) 인도적체류지위를 받은 후 다른 나라로 여행이 가능한가요?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난민 인정자와는 달리 인도적체류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IV.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지위자로 살아가기

### 1. 취업

#### 가. 난민신청자의 취업

##### (1) 난민신청자입니다.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을 신청한 후 6개월이 경과했거나,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거나,

---

기타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2) 어떻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장을 구한 다음 체류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종은 비전문직종으로 제한되며, 1회 체류기간 상한 6개월 이내로 허가가 주어집니다.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 ② 여권
- ③ 외국인등록증
- ④ 고용계약서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 활동을 받게 될 경우 허가내용과 허가기간을 명시하는 체류자격외활동 허가인이 여권에 날인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에서 심사기간 동안 여권을 맡기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3) 여권이 없어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여권이 없는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나 종종 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접수자가 여권을 요구하며 취업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를 경우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4)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고용계약서 상의 근로개시일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날짜 이후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일 이전으로 근로개시일을 적게 되면, 허가 없이 취

---

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게 됩니다.

**(5) 거주지와 회사의 관할 출입국이 다른 경우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거주지와 취업할 회사의 관할 출입국이 다를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의 관할 출입국에 가서 취업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주지와 취업할 회사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경우에는 취업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얼마나 기다려야 허가가 나오나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근무지로 재신청을 할 경우 최초 신청 시보다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7)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한가요?**

난 민신청자/인도적체류지위자는 단순노무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등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근무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9)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만료되어 갑니다. 또 신청을 해야 하나요?**

난민신청자의 경우 1회 6개월 이내로 취업허가를 받게 되므로, 그 기한이 지날 경우에는 다시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받았으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전문직종 취업, 허가 없이 취업) 난민신청자는 통고처분(벌금) 및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나. 인도적체류자의 취업

### (1) 인도적체류자는 어떻게 취업할 수 있나요?

인도적체류자는 포괄적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비전문직종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체류기간 상한 1년 범위 내에서 주어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난민신청자와 달리 사업장 지정 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 ② 여권
- ③ 외국인등록증

### (2) 근무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인도적체류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근무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 고용된 날 또는 고용된 기관, 단체 등을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www.hikorea.go.kr)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3) 체류기간이 만료되어갑니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인도적체류자의 경우 1회 1년 이하의 취업허가가 주어지므로 기한이 지날 경우에는 다시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포괄적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인도적체류자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범위반 횡수 및 정도에 따라 경고조치, 법칙금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허가 기간 제한,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5) 취업허가가 불허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취업허가가 불허되면 담당자를 통해 불허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이 가능한 사유일 경우 이를 준비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소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단체로부터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주거**

### **(1) 정부에서 운영하는 난민을 위한 주거시설이 있나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주거지원시설로서 영종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 중 입국 후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 상태에서 지원센터 이용신청을 한자, 재정착 희망난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응교육이 이루어집니다.

### **(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는 어떻게 입주할 수 있나요?**

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출입국지원센터에 입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345 또는 사무소 및 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3.생활

#### (1)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법무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시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합니다. 2015년 기준 1인당 생계비 지원 금액은 409,000원입니다.

#### (2) 생계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생계비 지원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체류지관할 사무소, 출장소 또는 난민신청을 한 사무소, 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li><li>② 확인서</li><li>③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단, 없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접수증)</li><li>④ 본인 명의 국내 발급 통장 사본(단,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li></ul> <p>* 부양가족/질병이 있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가능</p> |
|---|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immigration.go.kr>)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출한 통장 계좌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

### (3) 기타 음식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적십자사의 희망풍차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인정자에 한해 일시적인 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필요한 때에 직접 난민이 적십자로 연락하여 문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추가 문의는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4. 의료

### (1)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현재 법무부는 급작스러운 수술/입원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난민신청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싶은 신청자는 외국인등록증(카드 발급 전이라면 난민신청 접수증과 여권), 수술 및 입원 관련 영수증을 가지고 난민과(재확인 요)에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인당 최대 500,000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아 그 해 예산이 다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방문 전 난민과에 전화(☎1345 → 난민과 연결 요청)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지위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는 취업을 하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주 중에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직장건강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고용주를 통해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을 시 고용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

---

로 문의해주세요.

### **(3) 그 외 가입할 수 있는 다른 의료지원제도는 없나요?**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이 아닌 기타 단체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서비스로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서의 의료공제회와 희년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희년 의료공제회가 있습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의 의료공제조합은 국내 체류상태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 자와 자녀에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 체류한지 6개월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가까운 의료 공제회 회원 상담소에서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가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wefriends.org/sub/page.php?bo\\_table=eng10](http://www.wefriends.org/sub/page.php?bo_table=eng10)) 또는 전화 02-3147-0516~8 로 확인해주세요.

희년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공제회 가입자는 월 8,000 원 정도의 공제회비를 내면 협력 병원에서 일반 진료 비용보다 저렴하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ubileekorea.org](http://www.jubileekorea.org)), 또는 전화 02-858-7829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